

2025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충북 첨단로봇/제조 공동연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공고(2차) -

대학 주도 지산학연 협력 R&BD를 위해 RISE사업단 공동연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로봇/제조 공동연구센터 연구개발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 기업, 혁신기관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9월 24일
청주대학교 RISE사업단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충청북도의 첨단 로봇·제조 산업 핵심 요소기술과 맞춤형 R&BD 과제를 바탕으로 지산학연 협력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첨단 로봇 기술 도입,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과 협동 로봇 교육 지원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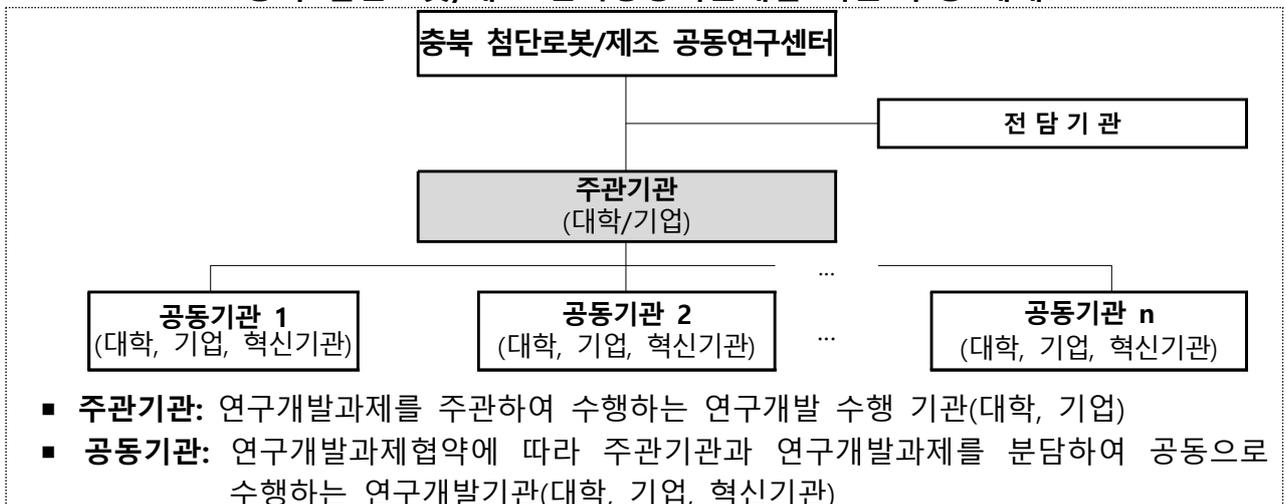
□ 사업내용

- 첨단로봇 제조 기반 R&BD 과제를 통해 기술개발과 지역 전략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대학·기업 연계 첨단 로봇·제조 산업 분야 연구개발 과제지원

□ 사업수행체계 : 대학-지역(충청북도) 기업 컨소시엄 필수

- 주관기관은 지원대상 대학 또는 기업 모두 가능
- 대학 : 책임자는 전임교원만 가능, 학생연구원 참여 필수
- 협력 기업(기관) : 기업, 혁신기관 등으로 구성 가능하며, 반드시 충청북도 소재지로 제한

< 충북 첨단로봇/제조 산학공동기술개발 기관 수행 체계 >



2 지원 상세내용

지원대상 대학

충북대학교

지원 산업분야 : 핵심 기술 기반, 지능형 시스템 기반, 통합솔루션 및 플랫폼 기반, 산업지원 및 서비스 기반 등

산업분야	정의
핵심 기술 기반	첨단로봇의 동작과 제어를 지원하는 핵심 부품과 첨단로봇/제조 관련 모듈을 개발·소형화·효율화하는 기술 기반 영역.
지능형 시스템 기반	AI 및 빅데이터 등 지능형 소프트웨어와 첨단로봇/제조 관련 시스템 통합 및 운영을 구현하는 지능형 기술 영역.
통합 솔루션 및 플랫폼 기반	다양한 요소기술을 통합해 완성도 높은 로봇 솔루션과 스마트 제조·물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솔루션 중심 영역.
산업 지원 및 서비스 기반	첨단/로봇제조의 도입·활용을 지원하며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사업화 등을 포괄하는 지원 서비스 영역.

지원규모 : 총 40백만원*

- 충북대학교 40백만원

지원상세규모

- 각 주관/참여 대학별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수 및 건당 지원금

<첨단로봇/제조 공동연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 지원 규모 >

1차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지원규모				
대학	과제 수(건)	건당 지원금 (백만원)	연구비 총액 (백만원)	기간
충북대학교	1	40	40	'25년 11월 ~ '26년 2월 (4개월)

* 품목지정 상세내용은 지원산업 분야 범주에 속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지원

* 건당 지원금에 따른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성과지표 목표는 별첨[1] 참조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 대학 : 충북대학교 전임교원, 학생연구원 참여 필수
- 기업(기관) : 중소기업·중견·대기업, 혁신기관(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충청북도 소재지로 제한, 기업 연구진 1인 이상 참여 필수

□ 신청 및 수행제한 처리기준

- (참여제한) 주관기관, 공동기관, 주관기관의 장, 공동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제한) 주관 및 공동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센터별로 1인당 최대 2과제(대학 단독 책임 1과제, 기업과의 공동 1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기준으로는 최대 4과제(대학 단독 책임 2과제)까지 신청 가능함
- (지원제외)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유사과제)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서류미비) 신청과제가 접수기간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의무불이행) 주관기관, 공동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전제외)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대학,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대학,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단, 대학,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의 연구책임자는 적용 예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으며 별도 “사전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제출 필요(주관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사전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직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1,0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 또는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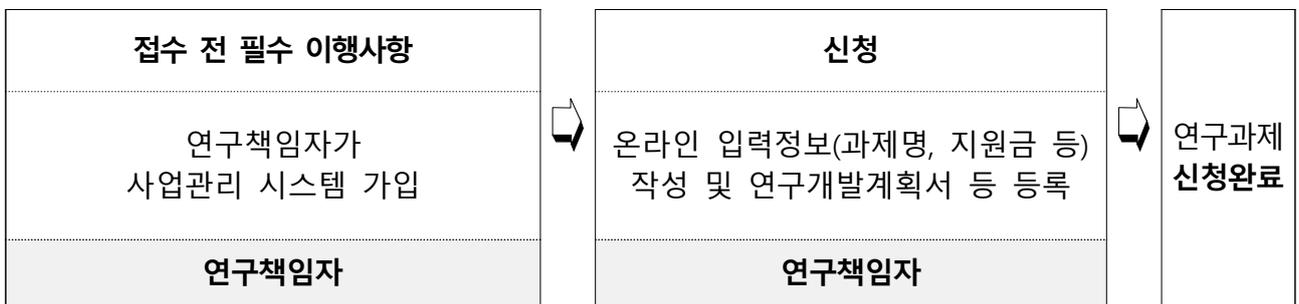
○ 행정사항

－ 사업 정산 시, 불인정되는 항목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연구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수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관리 시스템(<https://www.bsms.or.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
- 과제 접수 절차: 사업 관리시스템 접속 → 수혜기업 입장 → 연구책임자 로그인 → 공고내역 → 공고명 클릭 → 접수신청 → 과제명 및 지원금 입력, 접수파일 업로드 → 제출하기



□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구분	제출서류	제출부수	서식
필수 제출	① 연구개발계획서	스캔 사본 1부	[붙임 1]
	②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 2]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붙임 3]
	④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붙임 4]
	⑤ 협업기관 참여 의사 확인서		[붙임 5]
	- 별첨 1. 사업자등록증 (기업/혁신기관) — 이하 기업만 해당 — - 별첨 2.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별첨 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업공고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만 인정) - 별첨 4.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

5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5. 9. 24.(수) ~ 10. 13.(월)
- 접수기간 : 2025. 9. 24.(수) ~ 10. 13.(월) 17:00까지
- ※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

□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이후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참여제한의 경우 접수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과제 수행 시, 달성실적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26. 1. 31.까지 제출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학술진흥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등
- 본 사업의 RISE 사업비 편성 항목은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의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연구개발비 항목에 따라 산정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취소 및 향후 동 과제 참여 불가

6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추진내용	주요내용	추진주체	일정
사전검토	신청과제의 중복성, 참여제한 등 사전검토	전담기관	'25. 10. 14.(화) ~ 10. 15.(수)
발표평가	신청과제 발표	청주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25. 10. 21.(화)
조정 위원회	선정 예정 과제 확정 및 예산 조정	청주대학교 RISE사업단	'25. 10. 27.(월)
현장 실태조사	선정 예정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지역기업 대상 현장실태조사	청주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25. 10. 28.(화) ~ 10. 28.(수)
평가결과 통보	평가결과 신청기관 통보	청주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25. 10. 31.(금)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 이내 (1회에 한함)	청주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25. 10. 31.(금) ~ 11. 10.(월)
협약체결	선정과제 대상 협약 체결	협약 당사자 간	'25. 11. 11.(화)~

※ 상기 일정은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및 중복성, 신청자격 등 검토
- (발표평가) 제출서류 및 발표평가 등을 바탕으로, 전담기관의 선정 평가 후 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 결정
- (현장실태조사) 선정 예정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수행역량,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실시
- (협약체결) 평가결과에 따른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연구개발계획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주요 평가내용
연구개발 계획 및 내용 (40점)	사전 준비 및 지원의 필요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지역 기업 애로 기술 및 수요를 기반으로 문제 발굴 및 연구개발계획 수립의 타당성 ○ 선행연구 등의 사전 준비 노력 및 과거 유사 과제 수행 이력의 적절성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지역사회 문제 해결, 충북지역 기업 경쟁력 향상, 지역 혁신역량 제고 가능성 ○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목표의 도전성, 우수 기술성과 창출 가능성, 연구방법의 창의성 ○ 연구방법 내용 및 방법의 충실성, 추진전략의 적절성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편성 및 집행 계획의 적절성
추진역량 (30점)	추진체계의 적합성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공동기관 구성과 역량 및 역할 분담, 과제 수행 이력 및 성과,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인프라 보유 수준 및 활용계획 적절성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 전문성, 참여연구자 구성과 역량 및 역할 분담, 과제 수행 이력 및 성과의 적절성
기대효과 (30점)	기술 성과 창출 가능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지역 기업의 기술 애로 및 문제 해결 가능성 ○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 출원, 논문 게재, 기술이전 가능성
	기술 사업화 가능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 ○ 기술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과거 사업화 및 기술이전 실적 적정성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 효과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직·간접적인 신규고용 창출 효과 ○ 일자리 창출 및 관련 분야 연구인력 양성 가능성

- (선정기준)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으로 하며,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하나,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7 관련 규정 및 지침

□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따름

구분	관련 규정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진흥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관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 RISE 공동연구센터 평가관리지침

8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이메일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지산학연협력부	043-249-1278	lsh9444@cbnu.ac.kr
		043-249-1282	educom@cbnu.ac.kr

[별첨1] 충북대학교-첨단로봇/제조 공동연구센터

□ 1억 이하 연구과제- [충북도] 연구과제 수주 증가율 지표 연계

유형명	지원금액	지원과제(수)
② 1억 미만 연구과제	40백만원 내외	1개 내외

※ 지원금액 및 지원과제(수)는 조정위원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과제 필수 성과 기준 안내

연구성과				인력양성
논문	특허	기술이전		학생연구원
		건 수	기술이전료	
- '2.0'점 이상	- '1.0'점 이상	- '1.0'점 이상	- 출연금(현금) 대비 15% 이상	'1.0'점 이상

구분	항목	기준	점수
논문	SCI(E)급 게재	1건당	2점
	KCI급 게재	1건당	1점
특허	해외 등록	1건당	3점
	국내 등록	1건당	2점
	국내/외 출원	1건당	1점
	디자인권, 상표권 등 기타 지식재산권 등록	1건당	0.5점
기술이전	기술이전	1건	1점
	기술이전 기술이전료	출연금(현금) 대비 15% 이상	-
학생연구원	학부 학생연구원 참여	1명당	0.2점
	석사 학생연구원 참여	1명당	0.3점
	박사 학생연구원 참여	1명당	0.5점

※ 1차년도 사업기간(2025.5.16.~2026.2.28.) 내 달성 성과만 인정